

2002년을 위한 觀光法理의 制定性에 관한 研究

李 亢 求 *

<目 次>

- | | |
|---------------------|--------------------------|
| 1. 序 論 | 9) 觀光文化財法の 制定性 |
| 2. 觀光法理 理念의 相對性 | 10) 문화재 보호헌장론 연구 |
| 3. 觀光法理 制定의 必要性 | 11) 觀光食品法の 制定은
시급한 課題 |
| 1) 觀光법理의 世界統一化를 기대 | 12) 其他의 觀光법도 연구과제 |
| 2) 觀光헌장론의 연구 | (1) 觀光광고법 |
| 3) 觀光私法의 현실화 | (2) 觀光범죄관계법 |
| 4) 觀光할 수 있는 권리의 憲法化 | (3) 觀光특수경제법 |
| 5) 觀光環境法 制定의 必要性 | (4) 觀光세법 |
| 6) 觀光시설법의 具體化 | |
| 7) 觀光교통법의 陽性化 | 4. 結論 |
| 8) 觀光交通憲章의 制定을 提言한다 | * ABSTRACT |

1. 序 論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나뉠대로 많은 법률을 가지고 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1947년 제헌국회가 탄생한 이후, 오늘에 이르기 까지, 국회는 약 2,100여개의 본법을 제정하였다.

본법의 수가 이러한 진대, 시행령·시행규칙·조례·부령·지방자치의 규정에 이르기 까지 국민이 지켜야 할 모든 規範을 합하면, 그 수는 약 10,000여개의 법령이 제정되어 왔다¹⁾.

* 경기대학교 관광대학 교수 법학박사

1) 1996년도, 法典出版社, 大法典, pp.1-12 목차 참조.

이중에서 관광과 직접관계되는 것은 관광기본법과 관광진흥법이 고작이며, 관광 법률로서 예컨대, 한국관광공사법, 여권법과 법률이 몇개 있을 뿐이다.

그러나 관광사업이 운영되고 이끌어지기 위해서는 다른 분야의 법률 예컨대, 문화재관리를 위한 문화재 보호법과 관광객을 수송하기 위한 자동차 운수사업법과 같은 법률이 약 300여개의 관광관련 법규가 散在되어 있다²⁾.

비단, 이것은 관광관계의 법률만이 아니다. 한국 전체의 법률규범에 관한 문제이다.

원래, 규범이란 그 시대 그 문화를 질서있게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다. 기원전 753년에 Rome가 건국한 이래, 기원후 565년의 이르바, Iustinianus가 사망할때 까지, 법률의 기초가 이룩되었으나, 민법에 있어서는 현재의 모든 국가가 그 법률의 대부분을 로마법에 뿌리를 같이 하고 있다³⁾.

우리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다. 더욱이, 한국의 관광규범은 그 출발에서부터 “異質的인 條件”으로 출발하였다.

예컨대, 관광객이 여행사를 통하여 Itinerary를 계약하는 것은 개인에 해당하는 관광객이, 개인사업의 주체인 여행사와 상호간의 대리계약을 행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개인대 개인이 계약으로부터 출발하여, 계약완료의 결산이 있음으로서 계약을 종료하는 것이다.

이것은 여행계약이 개인과 개인의 계약인 “私法的인 계약”인 것이다. 관광호텔이나 관광객이용시설업 또는 국제회의 용역업도 마찬가지이다. 호텔업자인 개인과 관광객 또는 시설업자, 용역업자인 개인과 개인적인 행동인 개인이 자유롭게 계약하는 것이다⁴⁾.

말하자면 관광사업을 진흥하기 위한 계약의 내용은 전부 민법과 상법의 범주에 있다. 그러나 돌출적으로 관광진흥법의 내용이 관광사업자에게 指導事業的인 견지에서 제정되다.

이것은 모름지기, 관광과 관계되는 모든 법률에 정리되어 있지 아니하며, 교도적인 내용만이 준비되고 있다는 뜻이다.

더 더욱 심한 것은 약, 천여만명을 출입하게 하고 있는 국내외의 관광사업이 制度면에서 미개한 상태에 있다는 점이다.

관광수출이 얼마라고 호언만 하는 사업임을 실감케 하고 있다. 원래, 관광이란

2) 李亢求, 觀光法通論, 白山出版社, pp.381-522 참조.

3) 原田慶吉, 로마法, p.43 참조.

4) 上法田, p.150 참조.

관광수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관광수입보다는 민간외교로서, 국제친선이나 문화교류 및 무역증대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여야 하는 사업이다⁵⁾.

그러나 간접적인 理念은 고사하고 직접적인 이념이라도 살려야 할 것이나, 이에 대한 것도 구체적인 “法律文化”가 발달되지 아니한 상태이다.

하물며, 複數主義의 立法狀態에서, 관광관계법이 散在있다. 단수주의로서 정리할 수 있는 준비도 없다.

대학에서도 아직은 연구단계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관광사업의 발달이 늦게 진행될 것을 예고하는 것이다.

생각하면 이렇다. 관광관계의 모든 학문과 제도의 규정은 어제의 것이 오늘에는 역사책에 불과한 것과 같은 것이 관광학이라고 할 수 있다.

하루가 다르게 적용하고 새롭게 연구하여야 할 분야이다. 예컨대, 관광학에서 국립공원을 가르키면서, 외국의 것은 강하게 강조하는데, 국내의 自然公園法 속에 존재하는 국립공원은 도외시하는 경우이다. 이것은 뿌리가 없는 가공적인 학문을 하는 것과 같다⁶⁾.

한국 방문의 해를 되돌아보자, 성공적인 과제의 풀이가 되었다고 생각하는가, 그렇지 않다고 본다. 한국을 방문하라고 초청을 했으면 볼거리, 먹거리가 새롭게 준비되어야 하는데, 하물며, 한국을 쉽게 “문화적으로 안내”하고 추천할 수 있는 “관광문화재의 연구” 하나가 발표되지 아니하였다. 의욕만을 가지고 초청한 것이라고 본다.

예컨대, 남대문 하나라도 보람있게 쉬운 말로서, 어떻게 소개하는 것이 좋은가 하는 문제 하나라도 관광자원 관계 교재나 Curriculum에 규정되어 있는지 묻고 싶다.

5분이나 10분 잠시 동안 스쳐가면서, 외국의 문화를 이해하기는 힘이 든다. 이러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쉽고 재미있는” “품격을 선전할 수 있는” 준비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문화재의 대상도 연구하여야 한다.

말할 것도 없이, 관광학의 커리큘럼에 문화재의 연구가 존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준비도 하여야 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관광이라는 용어의 뿌리를 만들어야 한다. 모든 이의 권리는 어느 방면에서나 헌법을 근거로서, 각 부분에서 활용되고 있다. 예컨대, 깨끗한 환

5) 觀光基本法 第1條 上揭法典, p.5013 참조.

6) 自然公園法 第1條 上揭法典, p.3800 참조.

경에서 생활할 수 있다는 국민의 주장은 헌법에 성문규정으로 자리잡고 있기에 일반화되고 있다.

그러므로 관광이란 用語는 관광학에서만이,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로서 “모든 국민은 국내외를 자유로히” 여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야 하는 것과 같다⁷⁾.

더욱이, 2002년의 월드컵의 붐은 88년의 올림픽의 Boom과 비슷한 양상을 가져올 것이다. 그때를 대비해서 관광의 指針이 되는 “法律文化”로 부터 준비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 관광법리학적인 면에서 본 논문을 작성하는 것이다.

2. 관광법리 이념의 相對性

생산제일주의 시대의 관광의 법리란, 일정한 “Group의 여행”을 대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Package tour라는 用語가 있듯이 공동의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자기집을 떠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 理念을 정하였다.

그러나 1996년의 오늘에서의 관광법리의 대상은 사뭇, 달라진 形편으로 구성되어 있다⁸⁾.

세계의 많은 나라 사람들은 환경권과 쾌적권이 보장되고 있는 상태이다. 누구나가 관광을 즐길 수 있는 “상대적인 여행(relative tour)”으로 정하여져 있다. 말하자면 생활제일주의적인 관광시대인 것이다.

이것은 오늘의 관광을 “국민관광의 시대” 또는 Social tourism·Mass tourism의 시대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⁹⁾.

관광경제의 표현에서도 달라졌다. Mariotti가 관광경제를 주장하던 시대의 경제는 오늘의 관광경제와는 사뭇 다르다. 전자는 새로운 사업으로서의 경제를 중심으로 여행경제를 연구하는데 불과하였으나, 현대의 경제는 이른바, Tourism Export라는 국가경제의 중요부분으로 말하는 시대가 되었다. 경제 뿐 아니라, 관광이란 민간외교를 전제로 하여 국민경제의 향상과 국제친선, 문화교류라는 면까지 넓게

7) 李亢求, 觀光學序說, 白山出版社, 1996, pp.22-23 참조.

대한민국 헌법 제35조 참조.

헌법 제34조에서도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하였다.

8) 李亢求, 觀光學序說, 上揭書, p.24.

9) 上揭書, p.25.

그리고 장기적으로 계획하여야 하는 일차산업적인 요가가 존재하는 사업으로 그 유형이 변화하였다¹⁰⁾.

예컨대, 국제관광에 있어서 서로 다른 나라 사람 사이에 접촉하고 대화하고 관광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관광의 목적만을 담고 달리는 것이 아니다. 국제경제에 큰 영향을 주는 무역경제 속에서, 큰자리를 차지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인식이 되고 있다.

관광객의 종류에 있어서도 남성주종여행이 아니라, 남·녀·노·소 구별없이 특히, 젊은 여성의 관광객이 고객의 주종을 이루는 경우가 현실이다. 국적도 마찬가지이다. “竹의 장막” 또는 “철의 장막”이라는 정치적인 이념을 초월해서 서로 왕래하는 여행이 번성하고 있다.

비근한 예로서, 소비화폐의 종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어떤 국가에 입국하든지 간에 달러 또는 타국의 지폐를 자유롭게 환전할 수 있으며, 사용할 수 있는 것도 그 대상의 변화가 크게 달라진 것이다. 1960년대의 관광 Itinerary만 하더라도 여행지 국가의 전통성을 내용으로 하는 “역사기행”과 같은 코스를 여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었다. 그러나 오늘의 여정은 그렇지 않다¹¹⁾.

각기 다른 생각에서 서로 다른 직업의식에 따른 관광여정을 선택하는 경우이다. 단체관광객의 공통된 관람보다는 자기의식 개발을 위한 Educational Tourism쪽으로 변화를 찾고 있다.

관광교통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빠르고 싼 것만을 교통기관으로 선택하기 보다는 알찬여행이 될 수 있는 안전하고 볼거리가 있는 “그 무엇인가를 배울 것”이 있는 여행을 원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여러가지의 “Tourism Pattern의 변화”는 그들을 마지하는 관광지 국가의 “제도적인 준비”를 달리하고 있다고 보아야한 한다.

그들을 마지하는 관광시설이나 통관절차 또는 Service관계의 모든 것이 어제의 것으로 준비되어서는 아니된다.

왜냐하면 관광사업이란 이른바, “Information Business”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새롭고 신선한 정보”를 대상으로 관광물가의 변화·가격의 정보·정치적인 측면의 정보가 전제로 하는 사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이러한 변화되는 관광사업을 새롭게 단장하여, 보다 많은 손님을 맞이하려면 어

10) 上揭書, p.37 참조.

이것은 비단, Mariotti 뿐만 아니라 관광학자들은 대체로 경제소비설을 인정한다. 필자도 마찬가지이다.

11) 上揭書, p.74 참조.

제의 제도로서 이를 맞이하기에는 힘이 드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관광사업을 측면 또는 후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¹²⁾.

卽, 관광관계의 새롭고 “신선한 법률”이 사업하는 업자로 하여금 불편하지 아니 하여야 하며, 단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모든 제도가 확립되어야 한다. 그것이 관광사업을 발전시키는 요인이 된다.

그러하기에 관광법리의 방향이 변화된 오늘의 시점에서 특히, 2002년이라는 “관광수입확대를 위한 계기”를 성공시키려면 많은 법률의 개정과 준비만이, 중요한課題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법률의 준비란 문제한적인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부분의 법률은 그 준비가 시급하다.

3. 새로운 관광법리 제정의 必要性

1) 관광법의 世界統一化를 기대

한국의 법리는 제한적인 발달만을 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모든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생활화할 수 있는 부분의 것이 아니고 전문인만이 알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法典的인 개념으로 발달하여 왔다.

법률학 계통을 살펴봐도 1940년대의 제헌시대의 법률적인 것이나, 20세기가 끝나는 지금의 것이나 법학과의 연구 분야적인 면에서 크게 달라지지 못했다.

그러나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법률이 국민이 이해하기 힘든 내용으로 계속 제정된다면 입법의 연구가 더욱 필요한 것과 같이, “관광객을 위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법리는 새롭게 쉽게 누구나가 상식의 선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제정이 변화되어야 한다.

더욱이, 관광법리와 같이 비정치적인 분야이며, 세계 어느 국민이든지 간에 관광욕구의 대상이나 내용이 비슷한 분야이기 때문에 WTO를 통해 세계통일적인 것으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지금도 공업분야에서는 세계규격적인 것이 통일이 되고 있는 것과 같이, 얼마든

12) 관광사업이란 固定的인 사업이 아니다. 항상 변하고 발전하는 모습에 겨냥을 하여야 하는 사업이다. 그러기 때문에, 어제의 것을 오늘의 모델로 삼어서는 아니된다. 항상 새롭고 현실에 맞는 시설·가격·조건이 이루어져야 하는 사업이다. 그러므로 관광학도 마찬가지이다.

지 통일화는 기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관광현장으로부터, 이해하는 캠페인이 있어야 한다.

그러고 나서 조약이나 협정에 의해 세계관광법리의 통일화를 기하여야 한다¹³⁾.

관광학이란 세계평화적인 의미를 가진다. 특히, 관광객이 왕래함으로써 적용되는 여러가지의 규범 자체가 그 취지나 정신으로 보아 세계통일화를 기할 수 있다.

예컨대, 미국에서의 이른바, Comercial Code라고 하는 상법전이 있다. 이것은 상법전에 관한 다민족간의 습관을 “하나로 통일하여 정리한 법전”이 존재하고 있는 것과 같다. 미국인의 상사법에 관한 한 서로의 다름으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는 단점을 보완해 주고 있는 것과 같다. 세계의 관광법도 이와같이 하여야 할 것이다. 즉, 세계인의 관광법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모든 관광입국에서 관광을 위한 관광객의 절차나 제도는 거의 동일한 Itinerary적인 것으로 되어 있다. 화폐의 교환이나 도량형 또는 출입국 카드는 거의 동일한 양식으로 되어 있다.

오늘의 현실은 어떠한가, 관광을 위한 여권과 비자발급을 비롯하여 입국제도 및 혼전 또는 관광여행관계 요금의 지출과 환급과 같은 것이 각기의 국가에서 서로 다르게 제정된 법을 적용함으로써 관광객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

그러므로 서로 다른 세계인의 의논한 통일적인 입법이 필요하다. 이것은 물론, 불가능한 제안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세계인의 “통일된 관광법을 제정”하여야 한다는 이념만은 분명하게 밝혀두고 있다.

예컨대, WTO(World Tourism Organization)를 통하여 세계적인 여권의 규격이나 기재사항의 통일로부터, 초청장 또는 입국신청서의 작성과 같은 것을 우선 통일하자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제법리의 연구도 함께 하여야 한다.

2) 관광현장론의 연구

(1) 序

법치국가의 국민은 누구나가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법에 의한 국민의 인격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헌법이나 관광에 관계되는 법률은 그에 대한 구체적인 성문의 법이 없으며, 다만 헌법상에 대외적

13) 李亢求, 觀光法理學, 白山出版社, 1996, p.25 참조.

인 의미에서의 규정만이 있다.

즉, 한국의 헌법에는 모든 국민이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고 하였다. 예컨대, 헌법의 전문에서 모든 국민은 일상생활을 위한 “기회의 균등과 능력의 발휘에 있어서의 보장”만을 정하고 있다¹⁴⁾.

더욱이, 모든 국민에게는 자유와 권리에 뒤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기 위하여, 국민생활에 있어서의 균등향상을 장려하며, 대회적으로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 하게끔 하고 있다.

헌법의 본문에 있어서도 관광을 지원하는 규정은 많이 있다. 예컨대, 한국인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갖게 하며 누구에게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였다¹⁵⁾.

평등사상에 있어서도 모든 이는 성별과 종교 또는 사회적인 신분에 의하여 정치, 경제 및 사회문화적인 생활에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였다¹⁶⁾.

국민의 사생활에 있어서도 누구나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성문화하고 있다¹⁷⁾.

다만, 일반화가 되어 있는 국민의 여행 또는 “관광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는 아무런 명문이 없다. 다른 국가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광객이 여행을 하면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정치적인 이유나 사상적인 연유에 의하여 제한되지 아니한다는 관광이념을 명백하게 성문화하고 있는 국가가 많이 있다¹⁸⁾.

관광권에 대하여 성문화하고 있는 국가 이외에도 대개 국가의 헌법은 실제적인 표현은 하지 않지만 이른바, 반영권(Prunumbra Right)의 성문으로서 여행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한 국가가 많이 있다¹⁹⁾.

법리적인 해석으로 본다면 한국의 헌법도 후자에 속하는 경우이다. 원래 법이란

14) 한국 헌법 전문, 이집트, 프랑스, 서독, 인도네시아, 일본, 파키스탄, 스페인 헌법 전문 참조.

15) 헌법전문, 덴마크헌법 제20조, 서독헌법 제24조, 인도헌법 제51조, 소련헌법 제28조, 나이지리아헌법 제19조, 포르투갈헌법 제7조 참조.

16) 헌법 제9조, 엘살바도르헌법 제156조, 서독헌법 제1조, 그리스헌법 제2조, 인도헌법 제23조, 이탈리아헌법 제27조, 일본헌법 제13조, 멕시코헌법 제2조, 필리핀헌법 제5조, 스페인헌법 제10조 참조.

17) 헌법 제10조, 오스트레일리아헌법 제117조, 벨기에헌법 제6조, 중국헌법 제4조, 자유중국헌법 제5조, 덴마크헌법 제83조, 프랑스헌법 전문, 그리스헌법 제4조, 인도네시아헌법 제27조, 일본헌법 제14조, 멕시코헌법 제12조 참조.

18) 한국헌법 제34조, 칠레헌법 제10조, 코스타리카헌법 제21조, 인도네시아헌법 제27조, 일본헌법 제25조 참조.

19) 한국의 헌법에 있어서도 관광이란 半影權論에 의하여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필자의 학설이다.

자연법의 기초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반드시, 성문의 법이 존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규범의 정신에서 확인의 정신이 전제로 하는 경우에는 성문의 법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관광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헌법상에 성문화하여야 하지만, 실정법의 제정 이전에 있어서도 국민에게 권장함으로써 권리와 의무에 관한 이른바, 도덕적인 관념을 주지시킬 수 있다면, 이것이 곧 憲章 또는 章典과 같은 것이다²⁰⁾.

어떤 의미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권장 또는 캠페인 시키기 위한 문장이라 할 수 있다. 예컨대, 인권선언을 위한 장전이나 자연보호현장과 같이, 국민에게 직접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도덕적인 실행력”은 보장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²¹⁾.

그러므로 여행자에게는 자유행동이 관광행위로 연장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도덕적인 준칙, 전칙과 같은 현장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국내외의 여행인구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여행하는 이들의 민간외교적인 교양 관광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때에 어떤 지표가 있어야 함은 말할 것도 없다.

이를 위해 필자는 다음과 같은 관광현장 전 9조를 模擬法으로 제시한다. 이것은 관광객의 정신교양과 관광효과를 얻을 수 있게 하려는 학설적인 연구임을 말해둔다.

(2) (假題) 한국의 관광현장

1조 [목적] : 모든 국민은 관광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관광할 수 있는 여행의 권리는 어떠한 조건에 있어서도 평등한 기회와 이용의 기능을 가진다. 다만, 관광의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국가의 발전에 저해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설>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여행을 할 수 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각자의 자유로운 의사로서 여행 즉, 관광을 할 수 있다. 다만, 국내외의 여행자유에 대하여 성문으로 된 규정이 없을 뿐이다. 이것은 미국의 이른바, Amendment Constitution에서의 Penumbra Right(半影權)의 해석과 같이, 한국의

20) 현장이란 도덕적인 형식을 전제하는 법리이다. 장전, 전칙, 전장 등 여러가지의 용어로서 표현되는 것이나 헌법(constitution)과는 다른 말이다. Penumbra Right를 성문화한 것은 코스타리카헌법 제 22조, 터키헌법 제18조 참조.

21) 법률제정 이전에 행하는 절차이다. 선진국에서는 캠페인에서 성공하면, 법의 제정이 생략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한국의 자연보호현장은 1978년 10월 5일에 제정, 공포되었다.

헌법정신과 이전의 자유권을 근거로 하면 된다.

관광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에 있어서 평등한 기회라 함은 모든 국민의 법 앞 평등한 기회를 말한다.

예컨대, 평등한 기회를 갖는다고 해서 모든 국민에게 똑같은 여행코스를 같은 대우로서 여행할 수 있다는 절대적인 평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누구에게나 여행할 수 있는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는 상대적인 평등을 뜻한다. 이용의 기능 역시 상대적인 이용의 기능이다.

관광객은 관광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누구를 막론하고 관광시설과 관광에 필요한 여건에 알맞는 이용을 할 수 있다는 말이다. 다만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을 때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함은 물론이다.

이것은 본문의 내용에서 이른바, 국가발전에 저해되는 경우에는 관광할 수 있는 모든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한할 수 있음을 말한다. 예컨대, 무절제한 여행과 외화낭비의 요소에 있어서는 관광정책상 여행세를 부담케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는 것과 같다.

2조 [범위] : 모든 국민은 행복한 생활을 위하여 일과 이외에 있어서의 여가를 향유하며 생활할 수 있다. 여행생활의 범위는 국내의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타지방 또는 타국가의 문화교류는 국제친선의 정신과 함께 장려되어야 한다.

<해설>

인간이 행복을 만끽하는 것은 각자의 움직임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나 여행하면서 즐거움을 갖을 수 있는 유람적인 기회는 법률에 의하여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관광행복권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일과 이외의 여가를 즐기는데 있어서도 사회보장의 일환으로 국가는 간접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예컨대, 관광객이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데는 직접적인 관광시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인 지원시설인 도로, 전기, 수도와 같은 것도 “관광사회보장”의 하나로서 지원하여야 할 의무를 갖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국내관광의 범위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관광에 있어서 국제친선과 문화교류 및 무역증대를 위해서 더욱 필요한 조건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말이다.

관광사회정책이란 낯선 말이지만, 모든 이의 관광발전을 위해 간접적인 지원책

도 많이 마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관광교육에 대한 이해와 같다.

3조 [관광객의 자유] : 모든 국민은 창조적인 능력을 발휘하며, 휴식할 수 있는 여가의 자유를 가진다. 관광자원과 관광을 위한 시설의 이용과 국민의 관광여건을 인간가치의 향상을 위해 장려되어야 한다. 이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관광진흥의 시책이 항상 마련되어야 하며, 여행을 위한 유효성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해설>

여행을 행하는 목적에 대하여는 내일의 노동을 보다 건전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健全觀光說이 있다. 인간생활에 있어서의 창조능력이란 건문화대를 위한 여행과도 많은 함수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휴식은 창조를 생성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도 있다. 이것은 인간가치의 향상이라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다. 국민의 긍지를 인간가치의 향상이라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다. 국민의 긍지를 인간가치의 향상으로 보는 면이 있을 때, 관광진흥의 시책이 뒤따라야 한다.

관광진흥의 시책이란 관광객을 유치하는 여행업의 정책과 접대하는 관광숙박업의 정책 및 관광객이 이용하는 시설관계업의 정책을 말한다.

4조 [자유분의 배] : 모든 국민이 관광할 수 있는 자유의 분배는 절대적인 것이다. 다만, 공공복리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해설>

모든 국민의 여행에 대한 행동의 자유는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관광정책에 저해되는 내용이나 법치국가에 있어서의 행동의 자유로 밖에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하여야 할 것이다.

예컨대, 자유라고 해서 무절제한 행동까지 관광행위로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원래 국가란 인간들이 서로의 불편을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복리를 앞세우는 것이다. 이것은 관광질서를 유지하는데 있어서 절대적인 것이 되는 때가 많기 때문이다.

5조 [자원의 활용] : 모든 국민은 자연적인 자원을 비롯하여 문화 사회 및 산업의 자원을 자유롭게 이용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관광환경의 보호를 위한 제한은 관광자원을 보호하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해설>

모든 국민의 관광자원 활용이란 관광자원을 적절하게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관광자원에는 자연적인 관광자원을 비롯하여 문화적 내지는 사회, 산업적인 자원이 있다.

자연보호 헌장의 정신과 같이 자원이란 국민의 것이며, 자손들의 것이기 때문에 이용권과 활용권이 있음은 당연한 법이다. 다만, 관광환경을 보호하여야 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헌법정신에 비추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그러나 미래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관광자원 보다는 관광분위기를 조성시킬 수 있는 사회적인 관광자원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6조 [국민교양설] : 관광생활의 장려는 국민의 체력향상과 전문확대를 이룩하게 하여야 하며, 모든 국민이 관광하는 기본적인 교양향상을 기하는데 있다.

<해설>

모든 국민의 체력향상이나 전문확대는 국민교양의 향상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 국민교양의 향상이란 관광을 통하여 여행하는 국민의 관광양식이 보다 건전하고 보람있는 것으로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즉, 모든 국민이 관광하는 이른바, 인간적인 관광수준이 선진형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7조 [관광평화의 사도] : 모든 국민이 행하는 국내외의 관광행위는 “국제평화의 향상”을 기하는 데 필요한 것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서로 다른 지방 또는 국가의 국민간에 관광을 통한 대화와 접촉은 국제평화에 기여하는 크나큰 공헌이 되기 때문이다.

<해설>

관광객이 방문하는 지방이나 국가에 있어서는 관광소비를 행하는 면 이외에 현지 주민들과의 대화, 접촉, 이해를 통하여 민간외교를 행하는 주역이 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타지방 또는 타국에서는 관광객 한 사람의 언어, 교양, 태도를 보고 관광객의 출신지방이나 대한민국을 평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관광을 가리켜 민간외교라고 하는 것은 관광객 한 사람이 한국을 대표하는 평가를 받는 경우, 관광객의 관광하는 태도나 소비의 모습이 중요한 비판의 대상이 된다. 뿐만 아니라 관광민간외교로 인한 행위는 국제친선 즉,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이므로 관광사회 정책적인 면에서 연구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8조 [관광교육의 추진] : 모든 국민은 관광으로 인한 민간외교의 의무를 가진다. 여행하는 사람은 환국의 얼굴을 대변하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며, 스스로의 행동이 한국인의 행동으로 간주됨을 새롭게 인식하여야 한다.

<해설>

관광교육이란 모든 국민에게 관광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야 한다는 뜻이다. 인식시키는 교육의 방법은 따로 연구되어야 될 것이지만, 민간외교학적인 의미를 갖는 관광에 관한 교육은 관광진흥이나 관광인센티브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9조 [관광의 이념] : 관광은 놀이가 아니라, 건전한 자기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책임을 창출하는 것이며, 생활의 활력소를 마련하는 것이다. 변화하는 세계속에서 여행을 통한 건문의 확대는 자기를 발전시키는 원인이 된다.

<해설>

관광이란 생활에서 해방된 놀이의 일부가 아니다. 내일의 자기생활을 보다 행복하고 건전하게 발전시키기 위해 새로운 이념을 창출시킬 수 있는 기회이다.

예컨대, 과거와 같이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의 이념이 관광화하여서는 아니된다.

내일의 생활이 활력이 되기 위해서는 젊어서 일하고 늙어서 일하는 새로운 관광이념이 창출되어야 하며 모든 이가 관광이란 무엇인가 하는 이념적인 과제를 세삼 인식하여야 한다.

(3) 結

관광이란 세계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의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행하는 단순한 목적만을 생각하여서는 아니된다.

관광객의 건문화대를 비롯하여, 국제친선과 문화교류 및 간접적인 무역증대를 위한 민간외교임을 재인식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관광현장의 재정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임을 말해둔다.

3) 觀光私法の 現實化

우리가 다루어 가려고 하는 관광법규는 公法이다. 왜냐하면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객, 그리고 관광종사원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와 관계”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으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관광객이 타지방을 방문하거나 타 국가를 관광하기 위하여 여행업이라는 업자와 Tourism Itinerary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업자는 私企業體이다. 私體인 여행사와 관광객이라는 개인간에 어떤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분명 사체간의 관계로 보여진다. 즉, 개인과 개인간에 商事的인 행위나 결혼관계와 같이 개인간의 계약만으로 법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사법으로만 볼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왜냐하면 정부조직법 제40조에 의하여 문체부란 육운, 해운, 항공, 관광 등을 관할하는 것으로서 관광사업자를 지도 감독하기 위하여 제정된 모든 법을 관광공법으로 운영하면서 개인과 개인간의 여행계약관계의 것을 지도 감독하는 행정관할의 법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관광업자는 곧 문체부와 같은 공공기관은 아니다. 다만 공익적인 사업의 내용만을 가진 개인의 개인사업이다. 이것은 개인사업이 관광객이라고 하는 개인과의 법률관계가 이루어지는 법이 다시 뒷받침하여야 한다는 의미를 남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사법관계적인 관광의 법은 마련하지 못하였다. 즉, 국제간에 이루어지는 국제사법(International private law)적인 관광사법(Tourism private law)은 없다. 언제인가는 제정되어야 하는 것이 관광사법이다. 이것은 국제관광사법과 국내관광사법과 같은 것이다. 즉, 하루빨리 연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른바, International Private Law and Domestic Private law를 말한다.

원래, 관광행위는 개인과 개인업체 또는 자연인간에 이루어지는 경제를 내용으로 하는 이동행위이다. 그렇기 때문에 관광사법을 준비하고 연구하여야 할 때이다.

왜냐하면 민법 제22조에는 민사에 관한 모든 대상을 민법에서 그 법원을 찾는다 고 하였다. 屬地主義의 原則에서 예컨대, 관광객의 物權이나 債權 및 혼인관계의 역할은 관행에 의해 진행될 것이 아니라, 관광사법의 규정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형편은 어떠한가, 관광적인 사회생활의 규정과 사실이 서로 다른

내용으로 다루어질 뿐이다.

그것도 큰 규정이 없는 것이다. 예컨대, 관광객이 유실물을 분실하거나 습득하는 경우, 각 호텔이나 여행업자들의 규약은 각기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어떤 확실한 규약이 연구되어 있지 아니하다.

더욱 필요한 연구대상은 “관광상법”이다. 예컨대, 일반상법에서의 “商行爲”의 규정은 (상법 제46조-168조) 관광객의 움직임과 함께 적용되어야 하는 대상인데, 물건운송(상법 제125조)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하나 없이 관행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형편이다²²⁾.

4) 관광할 수 있는 권리의 憲法化

관광할 수 있는 권리를 헌법에 明示하지 아니하고서는 근거없는 학문이다. “관광학의 여행은 뿌리 없는 여행으로 그치는 것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것을 뒤받침하기 위하여 관광학에서의 무근거한 것들을 확인하지 않을 수 없다. 예컨대, 헌법에서나 관광진흥법에서 이른바, 관광객이라는 용어 하나가 정의롭게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때문에 호텔학에서는 고객이라고 표현하고 여행사에서는 손님이라고 한다.

관광의 주체인 사람을 관광객으로 표현하는 용어가 관광기본법에도 없기 때문이다.

관광학의 논문을 작성하는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관광영향평가제도” 하나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모든 것이 앙케이트 학문이다. 근거없고 무책임한 내용들 뿐이다.

관광공원제도나 관광계획론 또는 여행규약론·관광교통·관광선전·관광농업론 할 것 없이 우리가 연구하고 있는 모든 관광학 분야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²³⁾.

2002년의 도약을 맞기 위해서도 관광청은 신설하여야 한다. 그러나 법률적인 제도가 마련되지 아니한 지금의 상태에서는 관광청의 신설 자체가 무의미하다.

다시말하면, 관광사업은 상식이 아닌 제도권 속에서 근거있는 사업으로 이끌어 가야 하기 때문이다.

22) 上揭法典, pp.1501-1631, pp.1701-1746 참조.

23) 日本環境廳 自然保護局 企劃調整課, 自然公園法の 解説, 平成 5年, p.35 참조.

그러므로 헌법의 근거를 요구하는 것이다. 관광이라는 말이 용어로서 존재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를 존재시킬 만한 법적인 근거가 있는가? 간접적인 법의 근거는 있다고 할지 모르나 관광할 수 있는 행위가 과연 “권리로서 활용될 수 있는 있는가 하는 의문”에는 이를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본다.

법은 권리보호의 척도가 곧 법의 대상이 된다. 이를 권리라는 말로서 대변하고 있다. 사람들이 과연 “시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본적인 권리로서 정립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아니하다는 말만을 할 것이다. 즉, 우리의 법률생활에 있어서는 관광객이 자유로이 여행할 수 있는 권리의 근거가 없는 것이다.

헌법에 있어서 이전의 자유를 근거로 여행의 자유를 말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헌법상의 관광 또는 여행이라는 용어가 실정법으로 정하여지지 아니한 이상, 여기에서 여러가지의 법리적인 이론을 낳게 한다. 그렇지만 사실상에 있어서의 관광권은 존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를 법제화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해석할 수는 있을 것이다.

법이란 법적인 근거 또는 제도적인 근거를 요구한다. 그러므로 관광권에 관한 연구도 중요하겠지만 우선은 예컨대, 환경권과 같이, 헌법에 하루빨리 관광권이라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정하여 놓아야 한다. 그래야만 해외여행의 자유와 같은 행위에 대한 권리성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것은 물론 관광진흥법이나 관광기본법에 첨가하여도 무방하다고 볼지 모르나, 모법에 해당하는 헌법에 명백한 규정을 하여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싶다²⁴⁾. 외국의 헌법에서는 여행의 자유를 규정한 곳이 많이 있다.

WTO(World Tourism Organization)의 국제간의 왕래정신에 따르는데 있어서도 어떤 실체법의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관광권은 “인정되는 권리”로서 존재할때, 우리의 관광사업이나 관광객 중심주의와 국민관광의 발전도 기약할 수 있는 것이다.

관광을 하나의 권리로서 대우를 받지 못하는 법은 법으로서의 효력성에 있어서 법리적인 문제가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광권은 성문법의 규정으로 헌법에 현실화하는 것만이 제도를 개선할 수 있다.

5) 觀光環境法 제정의 必要性

24)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11조, 12조, 13조, 14조, 16조 참조.

우리에게는 많은 관광관계법이 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관광관계법중에서 관광환경(Tourism Environment)이라는 용어는 찾을 수 없다²⁵⁾. 현대사회에서 필요한 것은 인간의 환경문제다. 우리의 헌법에서 “누구나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함으로써 환경청은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관광에 있어서 필요한 관광분위기를 보장할 수 있는 관광환경과 관광시설 및 관광이동에 관한 여러가지의 관광환경이 요청되는 것이 사실이다. 아직껏 이에 대한 연구는 하지 않고 있다.

필자는 항상 느끼는 것이 있다. 관광이란 친절과 시설, 그리고 봉사적인 관광서비스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것들을 적용시킬 수 있는 관광환경이 대단히 중요하고 필요한 사항이다. 또한 관광환경의 보호는 법을 제정하여서라도 관광분야의 모든 법규에 Environment의 명제가 첨부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컨대, 제1조 目的條에서는 관광환경의 기본이념으로서 쾌적한 관광환경의 조성 과 이에 대한 관광객의 혜택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정책적인 이념이 규정되어야 한다.

제2조에서는 관광환경의 개념과 대상을 제3조에서는 모든 국민의 관광환경권에 관한 권리와 책무를 규정하고 제4조에서는 관광환경의 대상으로서 自然的, 文化的, 社會的 환경과 같은 모든 것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5조에서는 관광환경의 기본적인 기준과 시책을 제6조에서는 관광환경의 보존 방법과 관광환경의 영향평가제도를 규정하여야 한다.

제7조에서는 관광환경보존평가위원회 및 사무관리에 관한 규정을 하여야 하며, 제8조에서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의 응원과 자율적인 보존정책을 필수 있게 하는 것과 같다.

다시말하면 관광기본법에서는 국민관광의 발전을 위해, 관광진흥의 방향과 시책을 펼침으로서 국민경제의 향상을 기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러나 관광환경기본법에서 국내외 관광객의 관광분위기를 조성하고 이에 관한 “환경적인 여건”을 보다 질 좋게 쾌적한 관광환경을 이룩하게 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미래의 관광이란 관광환경의 기준이 곧 관광입국의 기준으로 변모하여 가고 있기 때문이다²⁶⁾.

25) 李允求, 觀光法理學論叢, 백산출판사, 1993, p.81, 261 참조.

26) 각조를 예견한 내용은 관광환경법이 제정되는 경우에 그 내용이 되어야 하는 부분을 조문으로 표현한 것이다.

미래에는 관광환경기본법이외에도 관광호텔환경법·여행환경법·관광시설환경법·관광국민환경법과 같은 것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6) 觀光施設法の具體化

우리의 관광사업법에는 관광객이용시설업이라는 업이 있다. 이에 대한 시설기준도 시행령에서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관광목표에 있어서 약 1/3을 차지하여야 하는 관광시설업이 관광숙박업이나 관광객을 유치하는 여행업이 차지하는 비중에 비한다면 너무나 빈약한 처지이다.

이것은 관광중진국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외국인의 관광에 있어서의 숙박과 음식 및 알선에 관한 사업에 비하하려면 '관광시설 개발법'도 마련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관한 투자성향도 달라질 것이다. 이에 대한 내용적인 향상도 같이 할 수 있을 것이다²⁷⁾.

즉, 우리가 할 수 있는 고유적인 관광시설과 전통문화적인 것 도는 현대적인 시설 등은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관광선진국이라면 관광사업의 과반수의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관광시설업에 관한 기본적인 계획과 이를 뒷받침하는 법의 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한국관광의 후진성을 말할때, 제일 먼저 제기되는 것이 관광시설업의 빈약이다. 원래, 관광이란 운동·오락·휴양·음식과 같은 시설로서 관광수입을 올리는 것이 으뜸이다. 여행업이나 호텔업이 곧 관광사업의 대명사인 것 같이, 말하고 정하는 자체가 후진적인 생각이다. 여행업이란 운송기관이나 숙박 또는 오락기관을 소개 또는 알선하고 이른바, principal로부터 commission을 받는 수수료업이다²⁸⁾. 호텔 역시, sleeping, eating, drinking하는 고정 숙박사업이다. 그러므로 수수료업이나 관광객이 활동하지 아니하는 고정시간에 얻는 사업은 관광사업에 있어서 본연의 사업이라고는 할 수 없다.

관광의 定義에서 말하듯이, 관광이란 이동하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다. Sport사업, Recreation사업, 외식사업과 음식사업, 장단기의 휴상시설 이용사업과 같다. "움직이는 과정"에서 소비하는 收入을 얻는 사업이 진실한 의미에 있어서의 관광사업이다.

27) 李亢求, 관광법통론, 上揭書, pp.73-79 참조.

28) 上揭書, p.59.

그러므로 선진된 관광사업으로 유도하려면 선진외국에 비해 가장 뒤 떨어진 관광관계의 시설업이 번창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관광시설업이 제정되어야 한다. 예컨대, 관광스포츠사업법, 관광휴양시설업법, 관광오락업법, 관광음식업, 관광농장업법 등과 같은 다양한 관광시설업 관계의 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고는 선진형의 관광사업이란 기대하기 힘이 들 것이다.

7) 觀光交通法の 陽性化

Tourism Transportation이라고 하면 모르는 이가 없다. 그러나 관광교통은 어떤 법을 근거로 하여 영업을 할 수 있나 하면 업자들 이외에는 이를 아는 이가 별로 없다. 이것은 관광이동 수단이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 근거가 되는 단일법이 없기 때문이다.

교통이란 분명, 일반 교통과 관광교통사이에는 개념으로부터 기대되는 효과에 이르기까지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다. 즉, 운반의 도구로부터 시설의 기본 및 내용이, 관광객을 운송하는 기관으로 어떤 특징을 가져야 하는 것과 같이, 관광교통은 나름대로의 특수성을 가진 교통수단으로 존재하여야 할 것이다. 관광객을 안전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저렴한 운임으로 운송하려면, 일반교통법을 통한 이용은 적당치 않다.

관광교통은 관광교통 나름대로의 시설, 등록의 내용을 정하는 관광교통법을 제정하여야 한다. 다시말하면 관광교통 본래의 목적과 수단이 뒤따르는 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독립된 법이 필요하다. 즉, 관광교통은 양성화에 뒤따르는 관광교통관계의 법이 있어야 한다. 즉, 관광객의 운송을 위한 육·해·공의 구체적인 교통관계법이 새롭게 존재하여야 한다.

원래, 관광교통이란 육상교통·해상교통·항공교통·기타의 특수교통을 의미한다²⁹⁾.

그러나 이들을 구비할 수 있는 제도가 없다. 얼핏 생각하면 관광버스가 다니고 항공기가 날으니까, 관광교통은 존재한다고 할지 모른다. 하지만, 벌리학적인 면에서 보면 그렇지 않다.

예컨대, “관광버스”라고 표시하고 다니는 모든 버스는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29) 李亢求, 觀光交通論 特講, 세움, 1993, pp.51-56 참조.

대절버스이다. 더욱이, 관광진흥법 제 11조 제3항에 의하면 관광업자가 아닌자는 관광 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로 사용할 수 없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관광사업자가 아닌 일반대절여객 Bus를 가지고 “관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관광버스라고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볼 수 있다.

항공관계도 마찬가지이다.

항공을 대절할 수 있는 package tour를 할 수 있는 “관광객을 위한 대절 항공업”이 존재하여야 한다.

관광해운업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 모든 것이 관광법이 정립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관광교통은 관광객 유치에 원인이 되는 사업이다. 관광객의 관광동기 중에 “새로운 비행기를 타보기 위해” Mono Rail를 타보기 위해, 여행 하려고 하는 심리가 많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므로 2002년에 월드컵을 유치한 상태에서의 관광교통업이란 대단히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관광교통은 종류면에서도 새롭고, 민속적인 교통 예컨대, 수중교통업, 하좌식 모노레일, 제주도내에서의 승마여행, 등산여행, 농업여행에 알맞는 관광교통법의 준비가 필요하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관광법에서의 관광교통업의 새로운 규정이 존재하여야 하며, 이른바 革新된 관광교통업이 탄생하여야 된다고 본다.

8) 관광교통현장의 제정을 제언한다.

한국에 있어서 관광교통현장이란 없다.

1,000만대에 가까운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 이지만, 전체국민이 교통안전에 관하여 관심있게 의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도 없다. 라디오, TV, 신문을 통하여 교통사고의 왕국이라는 보도가 자주 강조되고 있으나 교통안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나 사회정책이 마련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이것은 육상교통에서 만의 문제가 아니다. 항공기의 운행증가와 선박운행의 증가와 함께 다가오고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통사회정책적인 의미의 일환으로 교통이 안고 있는 여러가지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물론은 교통에 관한 제도적인 준비를 개선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하지만, 교통의 주체가 되는 모든 이들에게 새로운 인식과 교통문화에 대한 의무감을 고

취시키는 광범위한 노력이 앞서야 한다.

예컨대, 교통안전을 위한 참여정신은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소양의 무임을 인식케 하여야 하며, 교통기구를 움직이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무거운 의무감을 새롭게 인식시켜 주어야 한다.

일반적인 교통 뿐만이 아니라 타지방 타국을 여행하는 관광객들에게 그들을 접대하는 특별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제도적인 법의 제정이전에 국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이른바, 헌장 또는 장전이라 할 수 있다.

자연보호 헌장과 같이 교통헌장의 제정은 교통에 관계되는 모든이들에게 교통의 중요성과 생명의 안전성, 동물이 아닌 사람이 사는 곳에서 사람이 일으키는 것이 교통사고이라는 것을 예방하고 의식하는 지침이 있어야 한다.

교통에 관하여 권리만을 주장하는 사회가 아니라, 모든 이가 나름대로 교통의무를 항상 생활화하는 지표를 마련케 하는 헌장을 제언하는 것이다.

9) 觀光文化法の 制定性

현재, 한국의 법률중 문화보호법이나 문화재보호법은 관광의 대상중에서 관광자원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무형문화재와 유형문화재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막상 관광자원을 보존, 활용하는 예가 관광법에는 없다. 관광관계법에는 관광환경이라는 말이 없듯이, 관광문화물에 관한 것도 법률적인 근거가 없다³⁰⁾.

한국의 복수주의 입법의 예에 따라 움직일 뿐이다. 그러나 관광대상을 내용으로 하는 관광문화재는 관광문화법이라는 독립된 법을 마련하여 보호하는 방법으로부터 보존하는 방법, 그리고 관광효과를 만끽할 수 있게 관립시키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여러가지 성문화하여, 관광문화관계법을 하루속히 마련하여야 한다.

이것은 물론 관광문화의 영역이 연구된 후 다루어져야 할 것이나, 관광법으 과제로서 또는 관광객에게 문화관광을 성공시키는데 있어서는 하루빨리 연구하여야 하는 새로운 영역이다.

여기에서 필자가 말하는 “관광문화재”란 관광학 분야에서 최초의 용어이다. 한국의 문화재 보호법 제2조에서, 문화재란 국민이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와 같은 것을 문화재로서 규정하고 있으

30) 李亢求, 觀光學序說, 前掲書, pp.128-152 참조.

나, 관광의 객체로서의 문화재에 대한 것은 없다.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찾는 문화재란 무엇이며, 관광의 대상이 되는 문화적인 가치가 있는 것은 무엇이라는 개념을 정립하여야 한다. 이것을 관광문화재의 개념을 연구할 수 있는 대상이 살아 있는 것이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관광관련학과 어디에서도 커리큘럼에 관광문화재의 학점은 없다.

왜냐하면 관광문화재에 관한 교재나 연구가 전무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한국방문의 해를 정해 놓고 관광객에게 “전통적인 볼거리”를 마련하여야 하는데, 문화재로서의 볼거리가 있으면서도 이것을 표현하는 어떠한 구사도 없었다. 관광인류학적인 면도 마찬가지이다³¹⁾.

다시말하면 “문화재 Guide”이다. 이른바, Korean Guide라는 책자를 보자. 역사책과 같이 몇년에 무슨왕 무슨건축과 같이, 외국인에게 소개하기에는 너무나 거리가 먼 내용만을 역사전문서와 같이 서술하고 있다. 이것은 국제관광객에게 실용적인 가이드북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관광문화재의 영역을 하루 빨리, 관광교재에 편입하여, “쉽고도 흥미로운 전통문화재”를 관광할 수 있는 내용의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컨대, 문화재보호법·전통건축물보존법·독립기념관법·박물관미술진흥법·전통사찰보존법·향교재산법등과 같은 분야로서의 관광문화재 관계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이를 준비하기 위한 Campaign의 일환으로 문화재 보호헌장을 필자는 다음과 같이 연구하였다.

10) 문화재 보호헌장론 연구

(1) 序

누구를 막론하고 문화재는 보호하여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어떻게 보호하여야 하며, 의식적으로 어떻게 보호하는 행위를 하여야 하느냐 하는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의 의견으로 말할 수 있다. 법률에 의한 조치로서 하여야 한다는 이로부터 자연적인 보호정신에서 보호를 하여야 한다는 이론까지 많은 의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법률에 의한 보호에 있어서도 헌법에서조차 “文化財”라는 용어가 성문

31) 上揭書, p.250, 384 참조.

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³²⁾, 보호를 위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예컨대, 문화재보호법 제1조에서도 문화재로 보존하여 활용하여야 한다는 보호 목적적인 이론 이외에 제14조 및 제15조에 국가의 문화재에 대한 소유자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호하여야 한다고 하는 규정이 있을 뿐이다.

이것은 문화재에 대한 소유자나 관리자에 대한 개념적인 의견만을 강조한 것이다. 왜냐하면 문화재는 문화부장관으로부터 법률에 의하여 관리자로서의 지시를 받은 예보다는 일반관람객 또는 국민관람객이 문화재를 훼손, 파괴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이다.

국가나 단체 또는 소유자만이 문화재를 관리하고 보호하여서는 아니되며, 문화재를 관할하고 관심가질 수 있는 모든 이가 문화재의 보호에 관한 의무를 가져야 한다.

헌법에 있어서도 국민의 일반적인 의무 예컨대, 근로, 국방, 납세, 교육의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다.

문화재를 보호하는 것은 전체국민의 보이지 않는 의무임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다만 제9조에서 전통문화의 창달정신만을 정하고 있다³³⁾.

그렇기 때문에 성문의 의무규정이 없을 때, 우선 제정하여야 하는 것이 campaign의 역할만이라도 할 수 있는 이른바, 章典·宣言 또는 constitution이라 할 수 있는 헌장의 제정이다.

말하자면 관람자의 관람객 누구나를 막론하고 문화재를 보호하는데 있어서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리능력을 가지게 하여야 하며 관념만이라도 근간이 되게 하는 헌장이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성문의 규정은 없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模擬的 憲章”을 제안하는 것이다.

32) 한국의 헌법에서도 문화재 보호를 위한 성문의 규정은 없다.

다만, 擴大解釋으로서 제9조에서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暢達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여 간접적인 보호의 역할만을 규정하였다.

그러나 외국의 헌법에서도 예컨대, 브라질 헌법 172조의 文化的인 保存物의 보호 규정을 비롯하여 自由中國의 헌법 제165조, 中共 헌법 제13조·14조, 코스타리카 헌법 제89조, 이집트 헌법 제12조, 이탈리아 헌법 제9조, 나이지리아 헌법 제20조, 포르투갈 헌법 제77조, 스페인 헌법 제44조, 태국헌법 제61조 및 소련 헌법 제27조에는 문화재 개념은 차이가 있지만, 적극적인 보호의 규정을 하고 있다.

33) 문화재 보호법 제15조에서는 문화재의 公的인 관리자와 관리방법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문화재의 훼손원인자인 관람자 및 여행객의 문화재 보호적인 의무는 규정은 하지 않고 있다.

헌법 제9조에 있어서도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국가적인 責務만을 정하고 있다.

이것은 일본의 경우에도 文化廳에서 관리하는 것만을 정하고 있으므로 문화재 보호를 위한 헌장과 같은 것은 없다.

(2) (假稱) 文化財保護憲章

1조[目的]: 모든 국민은 文化的인 享有權을 가진다. 다만, 文化財는 保存하고 活用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해설>

1) 모든 국민이 문화재에 대한 享有權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문화재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의미이다. 여기에서는 권리에 있어서 소유권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권리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며, 국민의 固有權의 이른바, 傳統文化權(Fraditional culture rights)를 지칭하는 말이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헌법 제9조의 전통문화재에 대한 국가의 文化暢達權만을 가지고는 모든 국민의 문화재에 대한 享有權을 발효하게 하기에는 대단히 미흡한 규정이다.

예컨대, “국가와 국민은”이라고 규정하여야 하며 문화재 보호를 위한 명백한 성문의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2) 문화재를 보존한다고 하는 것은 문화재 보호법의 이른바, 保護라는 용어와 크게 다를 것은 없다. 보호에는 消極的 보호에 해당하는 Protection과 積極的 보호인 Conservation이 있기 때문에, 국가는 문화재에 대한 적극적 보호 관리자에 해당하며 모든 국민은 간접적인 보호관리자인 소극적인 보호자에 해당한다. 문화재를 보호할 위한 국민의 헌장을 제정하는데 있어서는 소극적인 보호에 해당하는 보존이 옳다고 해석된다.

그러므로 문화재를 보존한다는 것은 관람자나 관광객이 문화재를 간접적으로 보존하여야 할 의무가 보이지 않게 마련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3) 文化財를 活用한다는 것은 문화재의 관리의 목적이 모든 이에게 또는 자손들에게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항상 관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하는 원칙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임으로 활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국민은 문화재의 主人이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항상 문화재를 보고 느끼게 하여야 한다. 다만 活用に 있어서 무제한적인 뜻에 해당하느냐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이다.

즉, 문화재의 활용은 公共福利에 適合한 기준에 의하면 되기 때문이다.

2조 [보호를 위한 精神]: 모든 국민은 國民文化의 向上을 도모하게 하여야 하

며 人類精神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

<해설>

1) 국민문화의 향상을 기한다 함은 문화적인 價値가 있다고 하여 문화재로서 정하여 놓은 것만이 아니다. 문화적으로 또는 전통적인 가치가 있음으로써 국가는 이를 보존하여 모든 국민에게 祖上의 文化에 대한 긍지와 사실을 견문하게 하는 정신에 있다.

문화재 보호법 제1조의 이른바, 문화재를 보존하여 국민의 文化的인 向上을 도모하고 人類文化의 발전에 기여하는데 있다는 뜻이 바로 그것이다. 예컨대,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와 같은 것을 제2조의 종류로서 구분한 것도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문화재 보호를 위한 구분이다. 그러므로 문화재를 보호한다는 것이 자체의 국민문화를 향상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더욱이, 문화재를 보호하는 것은 거시적인 의미에 있어서 국제관광 사회의 인류공동의 소유개념도 존재하여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문화재라고 해서 한국인만의 것이 아니라 精神的으로 인류의 것이라는 觀念도 이해를 하여야 한다.

2) 현대는 人類學的인 提唱이 많이 있는 시대이다. 서로 다른 文化圈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인간 본래의 理念은 서로 다른 사람들간의 人間文化이다.

인간문화의 여러 가지 중에서 우선 관광을 통하여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인류정신에 의한 문화재의 보호이다.

3) 문화재를 보호한다는 것은 인간에 있어서 평화로운 양식의 보호이다. 평화가 있는 곳에 문화재의 보호가 존재할 수 있으며, 여러 사람에게 감상하고 견문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3조 [資産的인 價値] : 모든 문화재는 우리들의 것일 뿐 아니라 子孫들의 것이다. 오늘의 소유는 보호하는데 그쳐야 한다.

<해설>

1) 모든 문화재는 모든 이의 정성과 민족문화의 정신이 깃들여진 작품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인 것만이 아니라, 민족의 것이며 후손들의 것이다.

현대에 있어서 문화재를 소유하고 支配할 수 있다고 해서 民族遺産인 문화재가 마음대로 훼손하고 처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현재의 소유자와 지배자는 문화재를 잘 管理(Management)하여야 하는 보이지 아니하는 관리의무를 갖게 하는

것뿐이다.

2) 인간들의 부분별한 문화환경에 훼손으로 인하여 또는 욕심스러운 소유욕으로 인하여 문화재에서 파괴를 가져와서도 아니된다. 왜냐하면 현대인은 문화재에 대한 처분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3) 모든 인류를 위하여 문화적, 학술적으로 보존의 가치가 있는 것은 후대의 인류들을 위해서도 신성하게 보존하여야 한다. 문화재가 오락의 놀이기구로 이용되어서도 아니된다.

4) 이것은 모든 이에게 民族遺産의 중요성에 대하여 교육을 통하여 보호하게끔 사회정책적인 연구가 있어야 한다.

말하자면 한번 파괴된 문화재는 복원하기가 힘든 것이다. 인류문화의 자존심을 파괴하는 것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그러자면 間接·直接으로 어떠한 형태의 교육이든지 간에 일깨워줌으로써 문화재를 보호할 수 있는 정신을 마련하게 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4조 [觀念] : 문화재는 民族文化의 創造에 보탬이 된다. 모든 국민에게 文化環境을 제공하고 福利增進에도 이바지하게 하여야 한다.

<해설>

1) 문화재는 민족문화의 열이 담긴 유산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민족문화를 창조하는 原因이 되고 있다. 뿐만이 아니라 민족문화의 矜持를 살릴 수 있는 문화의 작품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에게 문화환경을 조성시킬 수 있는 제일 먼저의 것이 문화재이다.

문화재의 鑑賞과 理解 靈感(inspiration)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복리증진의 역할도 함께 하는 것이다.

2) 1961년 서독에서 이른바, 絶色憲章(Grüne Charte der den meingu)을 발표하면서 “자연에 손을 대지 말자”라고 하는 운동을 자연보호의 사상으로 公共福利 또는 福利增進의 向上에 이바지하고 思想으로 승화시키려는 理念的인 目的을 가졌다. 문화재 보호를 위한 헌장도 민족의 문화복리의 증진이라는 목표로서 승화적인 이념으로 살려나가야 한다.

5조 [觀覽] : 모든 이에게 적절하게 관람되고 정서생활에도 향상을 기하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

<해설>

1) 문화재란 전체 민족의 公共財産이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가 관람함으로써 인하여 각자의 정서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러나 문화재의 민족공유적인 재산적 관념이 있다하더라도 유산으로서의 역할을 살리려면 관람을 통하여 많은 이가 감상하고 관람하여야 하며, 유지·본존이라는 관념을 저버려서는 아니 될 것이다.

즉, 적절한 관람이란 Arstoteles가 말하는 이른바, 상대적인 관람을 원칙으로 하지 않을 수 없다는 뜻이다.

2) 뿐만이 아니라, 문화재란 관람할 수 있는 정신적인 여건이 구비되었을 때, 관람시켜야 하는 불가피한 이유가 있다. 문화재가 곧, 놀이마당의 악세서리와 같이 취급된다면 아니된다. 누구나가 보고 느낄 수 있는 조상의 유산이지만, 문화재를 감상함으로써 어떤 보탬이 되는 이른바, 적절함이 전제되어야 한다.

6조 [문화재의 價値性] : 문화재는 어떠한 것을 막론하고 국민의 재산이다. 이를 위해 영원히 간직할 수 있는 조치로서 보호를 하여야 한다.

<해설>

1) 문화재의 보호에 대한 타당성에 대하여 누구나가 긍정적으로 대하는 것이 관례이다. 그러나 한번 파괴되면 소생할 수 없는 민족의 유산이며, 국민공동의 財産이다. 아껴야 한다고 하는 정신적인 실천을 생활화하는 이가 많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문화재를 대하는 많은 이로 하여금 민족의 영원한 재산이라는 Campian적인 呼訴가 필요하다.

2) 문화재 본래의 目的인 많은 이가 보고 느끼고 배우는 객체로서 보호를 하지 않으면 이에 대한 국민의 共感帶的인 조치와 연구가 있어야 한다.

문화재 보호를 위한 조치는 즉흥적 것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영원히 보존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7조 [開發과 責任] : 문화재는 개발되어야 한다. 祖上의 일을 찾아 後孫에게 전하여 주는 것 자체가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의 개발이다.

<해설>

1) 한국은 많은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1982년에는 문화재 보호법을 마련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문화재 보호법에 말하는 문화재만 하더라도 일반문화재로부터 지정문화재에 이르기까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보존되고 있다. 이것은 어느 국가의 경우에나 마찬가지이다.

2) 그러나 개발되지 아니한 문화재도 많을 것이다. 개발되지 아니한 문화재의 발견과 보호에 대하여 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3) 개발에는 반드시, 보이지 않는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개발과 책임을 複合的으로 準用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8조 [精神] : 문화재는 神聖한 것이다. 그러나 모든 국민은 문화재 보호를 위한 無限의 責任을 가진다. 한번의 파괴가 훼손을 가져와서는 아니되기 때문이다.

<해설>

1) 문화재는 神聖한 것이며, 모든 이가 보호의 책임을 새삼 느끼게 하는 生活化가 요청된다. 관심 있는 자만이 문화재를 보호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 유산의 존립성에 대한 책임은 관심 없는 자에게도 보호하여야 하는 간접의 책임이 존재하여야 한다.

2) 문화재는 공동의 문화재산이며 유산이기 때문에, 정신적인 보호의 책임에 있어서도 모든 국민이 무한적인 책임을 지는 마음으로 대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9조 [인류에게 공헌] : 문화재는 人類文化 發展에 원동력이 된다. 서로 다른 문화라 할지라도 문화간의 교류로서 인류의 共同意識을 찾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해설>

국제화시대에 있어 서로 경쟁하고 다투는 속에서도 自國의 文化財를 보호한다는 인류적인 정신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장려하려고 하고 있다. 이것은 서로간의 인류적인 공헌을 전제로 하는 정신에서 출발하는 것으로서 서로간의 문화교류를 이해하고 보호하는 의식을 찾아나가야 한다는 뜻이다.

(3) 結

언제인가는 관람자나 관광객으로부터 문화재를 보호받아야 하며, 문화재는 보호하여야 한다고 하는 眞理를 헌법의 본문에 명문화하여야 한다.

깨끗한 환경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듯이, 우리의 문화재를 관람할 수 있는 권리와 함께 보호·보존을 위한 의무도 함께 규정하여야 한다.

문화재 보호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국가와 문화재를 관리하는 단체만을 主體로 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재의 利用主體는 관람자 또는 관광객이다. 어느 쪽이 주체가 되는가에 대하여서는 이론상의 차이일 뿐이지만, 문화재의 보호에 대한 “行爲能力”을 법으로 정하여야 한다. 보호를 위한 분위기로 보아 당연한 일이다.

문화재 보호를 위한 법을 제정하기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 문화재 보호를 위한 헌장만이라도 제정하여 모든 이가 보호를 위한 책임의식이 함께 하게 하여야 한다.

11) 觀光食品法の 제정은 시급한 과제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사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시설과 음식이 으뜸이다. 여기에서는 음식만을 대상으로 그 영역을 연구하려는 것이다.

국내외를 여행하는 관광객은 누구나를 막론하고 1일3식으로 음식을 섭취하여야 한다. 이러한 음식 섭취를 위해서 이른바, 식품위생법 제1조 에서 국민보건으 증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食品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 하려고 식품위생법을 제정하며라고 규정하였다. 제2조에서는 식품이란 음식을 가르켜 식품이라 한다고 하였다.

동법을 해방이후의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법을 제정하여 운영되어 오던바 1988년과 1991년에 전면개정을 하였다.

하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음식의 종류를 규정하지 아니하고 “음식물이라는 包括的인 用語”만을 규정하고 있다. 법의 제정 취지와 같이 한국인의 국내음식을 대상으로 식품을 위생적으로 다루게 하는데 그쳤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현대의 관광사업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관광객으로 한국을 방문하며, 특히 서양식, 불란서식, 일본식의 음식을 찾고 있다³⁴⁾.

이것은 분명 식품의 성질상 한국식 음식을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동법만으로는 그 관리가 소홀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세계의 모든 식품을 위생적으로 잘 관리하고 조리하여 “맛있고 잘 팔리는 음식”을 제도화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이때에 必要한 것이 이른바, “관광식품법”이다.

이것은 공중위생법에서 말하는 접객업소의 음식이 아니고 “관광진흥법에서 말하

34) 上掲法典, pp.4103-4113 참조.

는 음식”을 대상으로 관광객의 위생과 보건에 이바지할 수 있는 식품을 대상으로 제정하자는 것이다³⁵⁾.

식품위생법과 공중위생법이 한가지의 응용법규라 하면 관광식품법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상의 모든 음식 판매와 관계되는 응용법규가 되지 않을 수 없다.

다시말하면 관광객의 음식제공을 관리하려면 예컨대, 그 대상에 있어서 관광객만을 상대하는 것이어야 하며 다양한 종족별 서로 다른 “세계속의 음식”을 대상으로 하는 법을 제정하여야 한다. 이것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관광객을 위한 음식문화의 현실을 사실화하는 과정에 불과하지만 제도의 구비는 시급하다 아니할 수 없다. 또한 관광식품법을 제정하는 경우에 음식을 조리하는 일반조리사와는 다른 “관광조리사”제도도 첨가하여야 할 것이다.

말하건대, 관광식품법이 없는 각 대학의 “조리학관계학과”는 그 뿌리를 찾아 연구하기가 힘들 것이다.

12) 其他의 觀光法도 研究課題

(1) 관광광고법

관광사업에 있어서 광고 또는 publicity가 차지하는 진흥의 목표는 대단히, 크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현재의 제도 속에서는 “관광광고”의 근거는 없다. 다만 관광진흥법 제20조에서, 관광정보를 장려하여야 한다고 하는 宣言的인 취지만을 규정할 뿐 오히려, 관광사업자의 선전행위를 조정, 권고하는 제약적인 규정만이 있을 뿐이다. 이것은 홍보의 중요성은 인식하되, 근거가 없음으로 대학의 연구기관에서도 관광홍보법의 제정관계는 단 한줄의 연구가 없는 것이 원인이라 할 수 있다.

(2) 관광객과 관계되는 관광범죄관계법

원래, 관광객이란 관광구역이라는 특수지역만을 대상으로 여행하는 것임으로 그 구역내에서는 아무런 범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게 보호하여 줄 의무가 있다.

가칭하여 관광경찰(Tourism Police)이다. 관광객과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특수경찰로서 여행의 편의도 함께 도와 줄 수 있는 “민간외교경찰”이다.

35) 上同, pp.4146-4153 참조.

관광진흥법을 관광호텔에서의 청원경찰을 배치하여 호텔내에서의 범죄예방과 처리를 지원하고 있을 뿐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민간외교 경찰이란 Guide police를 말한다³⁶⁾.

(3) 觀光特殊經濟法

관광학에서 Tourism Export(관광수출)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한다. 어떤 때는 관광경제를 못하는 때도 있다. 관광사업에 있어서 관광경제에 관한 것은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관광경제에 관한 흑자관계 또는 적자관계, 통계관계, 다른 국가와의 비교관계, 경제이동관계와 같은 것을 관리하는 기관은 따로 없다. 이것은 아직껏 관광통계학이나 관광재정학 또는 관광에 관한 특수경제로서의 관광경제학이 존재하고 있지 아니하다³⁷⁾.

이것 역시, 관광경제에 관한 법적의 근거가 전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분야로서 이에 대한 연구는 시급하다 아니할 수 없다.

(4) 觀光稅法

관광사업은 특혜사업인것 같은 인상을 준다.

그러나, 관광사업이기 때문에 세무상에 특혜를 주어야 하는 이유와 내용이 있어야 한다.

다시말하면 관광진흥기금과 같은 것을 제공하면서 특혜사업인 것같은 印象을 갖는 것이 아닌가 한다³⁸⁾.

관광진흥법상 민간외교 사업이며, 관광경제의 활성화를 이루기 위한 “어떠한 措置”라도 명백하게 제정하여야 한다. 막연하게 관광사업을 지원한다고 하는 現象보다는 包括的으로 “관광세법에 관한 어떤 法律”을 제정함으로써 관광업자에게 확실한 소신을 갖고 민간외교사업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36) 上掲法典, pp.2099-2100 참조.

37) 同法典, p.407, 제3조 참조.

38) 國稅基本法 제 1조 참조.

4. 結 論

본 논문에서 가장 크게 지적하고 싶은 것은 “새로운 規範을 신속하게” 현업에 활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관광사업은 常識을 가지고 다루던 시대가 지나갔다. 전문적인 service사업으로서 가꾸어 나가야 한다.

전문적인 지식의 주원이란 국회를 통과한 정법이 존재하게 한 다음 이에 대한 연구와 실무의 경험이 함께 동참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새로운 제도란 새로운 현실적인 입법을 意味한다. 예컨대, 민간외교적인 세계화규범으로서 헌법상의 관광행위의 권리화, 관광여건의 조성과 보존에 관한 관광환경법의 제정, 관광수입과 관광본연의 업인 관광시설업에 관한 법률, 육·해·공의 관광객 운송을 위한 관광교통업의 새로운 업종 시설 및 관광교통관계법의 제정·관광객의 外食과 관련되는 식품관계법인 관광식품법의 제정·관광자원의 보존과 보호를 위한 관광문화재법의 제정·기타의 관광광고법·관광범죄 관계법·관광을 위한 特殊경제법·관광세법과 같은 법규를 제정하여야 한다.

다시말하면 “법없이 운영되는 내용”이란 정기적인 진흥을 기대할 수 없다. 미래에는 더욱 그러하다. 나라와 나라사이 뿐만이 아니라, 지역과 지역간의 사이에서도 서로 다른 제도와 관습이 존재할 때, 이를 해결하며 예방할 수 있는 것이 성문의 규범이다.

더욱이, 1차 산업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광사업은 엄격한 규정이 있음으로서 관광질서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관광관계법이란 있으면 있을 수록 분쟁을 예방하고 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 그러므로 관광법 문화의 연구가 더욱 요청된다.

관광학에서는 법문화를 가르켜 관광과 전혀, 무관한 학문인 것같이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현실을 도외시하는 연구적 태도이다. 넓은 사회과학속에서 관광학이 존재하며, 관광학 속에 관광법규학이 그 뿌리로서 존재하는 것이다. 즉, 관광관계법의 개발은 法理的으로 革新되어야 한다.

ABSTRACT

The study of renovating the tourism law of theory

Lee, Hang Ghu

Many of legislations related to tourism has been made up to now since the year 1961 when modern tourism studies started. In restropect of the year 1988, the year 2002 is expected to be another chance for tourism. In order to take this chance again, new laws and regulations are necessary. Therefore, the object of this study are decided as follows:

- 1) to put 'the right to go sightseeing' in statutory form at constitution.
- 2) to realise the private law of tourism
- 3) to make the environment law of tourism
- 4) to make the facility law of tourism
- 5) to make the transportation law of tourism
- 6) to make the cultural property law of tourism
- 7) to make the food law of tourism
- 8) to make the related law of tourism
- 9) to make the advertising law of tourism, the tax law of tourism, and the economy law of tourism

As tourism laws like above exist, tourism industry would be developed more than now.